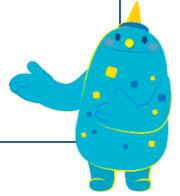


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**무료** 서비스 신청 안내

쉽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!

- ◆ 신청절차는 '입주자대표회의 의결'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◆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은 2개월 단위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. (기존 3개월 단위)



● 서비스 개요

구 분	관리진단	기술자문
내 용	관리행정, 회계, 장기수선계획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	공사의 시기, 비용, 방법 등 적정성 검토
신 청 자 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 ▪ 관리사무소장 ▪ 입주민 (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동의서 첨부) ▪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 ▪ 관리사무소장
신 청 대 상	분양 공동주택 20개 단지 * * 대상단지 별도 심사 및 선정	분양 공동주택 10개 단지 * * 대상단지 별도 심사 및 선정
신 청 기 간	2019년 12월 2일 (월) ~ 2020년 1월 31일 (금)	2019년 12월 2일 (월) ~ 2020년 1월 31일 (금)
서 비 스 기 간	2020년 2월 ~ 2020년 4월	2020년 2월 ~ 2020년 4월

※ 정식자문 : 제출한 설계도면, 예산내역서, 시방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

※ 약식자문 : 별도 서류 없이 요청한 공사내용에 대해 시행 시기, 방법, 방향 등을 간단히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함

※ 세부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(<http://myapt.molit.go.kr>) 메뉴 - 관리진단 또는 기술자문 참조

(신청 및 선정 방법 등 다음 페이지 참고)

● 신청 · 선정방법 등

[신청 방법]

-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*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, 온라인으로 신청 (우편접수 불가)
 - *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myapt.molit.go.kr>
 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(또는 직무대행자)이 신청하는 경우
 - 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(또는 직무대행자)임을 증명하는 서류* 첨부
 -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
 - ➔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 (진단 시 동의서 진위 여부 관리사무소 확인)
 -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경우
 - ➔ 신청관련 공문 사본 첨부
 -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
 - ➔ 관리사무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** 첨부
- * "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"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증명하는 서류
 **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 증명서 또는 임명장 등

[선정 방법]

-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
- 대상단지 선정기준 평가항목

구 분	평가 항목	관리업무 컨설팅	공사 기술자문
계량평가	세대수 규모	○	○
	노후화 정도	○	○
	관리역량	○	○
	신청자 자격	○	
	해당공사 설계도		○
	해당공사 내역서		○
	해당공사 시방서		○
비계량평가	진단, 자문 당위성	○	○

※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배분하되, 관리업무 관련 수사·재판(소송) 등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제외

[기타 문의 전화]

-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 - 7004 (상담센터)